

Issue Comment

2018. 1. 23

자동차산업

차량 2부제 시행 시 신차 판매 영향 점검



자동차/부품/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098-6690

Joonsung.kim@meritz.co.kr

RA 이종현

02. 6098-6654

Jonghyun_lee@meritz.co.kr

서울시, 차량 2부제 실행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 2부제 적용 필요성 또한 언급. 당사는 2부제 실행에 따른 신차 판매 영향의 국내외 사례 점검을 진행.

해외사례: 중국 · 프랑스, 2부제 적용과 신차 판매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부재

대기오염 개선을 목표로 2부제를 실시한 해외사례는 중국 베이징과 프랑스 파리에서 확인가능. 베이징은 15년 2회 각각 4일 (12.7~10, 12.19~22), 16년 1회 6일(12.16~21) 시행했으며, 파리는 14년 1회 1일(3.17), 15년 1회 1일 (3.23), 16년 2회 각각 3일 (12.6~9, 12.16~17)을 시행.

소비자의 차량구매 의사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대외변수들이 공존하기에, 2부제 시행 만의 독립적 영향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실제로 2부제가 6일씩 실행되었던 16년 12월 중국 · 프랑스의 신차 판매 성장률은 각각 +11.1%, +6.2%였으며, 2부제가 차량구매에 주요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음.

18년 서울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난해와 같이 13일이라 가정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2부제 시행일은 연간 10일 내외일 전망.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같은 규모의 차량 2부제 시행은 신차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국내사례: 인천 아시안게임 중 16일간 2부제 실행했으나, 신차등록대수 +14.9% 증가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서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될 가능성 존재.

이로 인한 신차 판매 영향은 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사례를 통해 확인가능. 인천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총 16일간(평창동계올림픽 17일) 진행됐으며, 당시 인천 전역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 그러나 인천시 9월 신차등록대수는 전년대비 +14.9% 증가. 14년 연간 신차등록대수 또한 전년대비 +16.0%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수치 (부산 +14.4%, 대구 +11.1%, 서울 +5.9%, 전국 +9.8%)였음. 이는 2부제 실행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

결론: 차령 2부제 실행에 따른 신차 판매 둔화우려 불필요

국내외 사례 점검을 통해 제한적 규모의 2부제 실행은 신차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 극단적 대기오염 악화로 2부제 실행의 규모가 유례없을 정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2부제 실행에 따른 신차 판매 둔화우려는 불필요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이종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